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Ordinance

이 승 원(Seung Wo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향 |
| II. 작은도서관 현황과 관련 법규 | V. 결론 |
| III.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조례, 작은도서관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pporting small libraries through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Based upon identifying of ordinances,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from local governments. Direct support is provide budget to small libraries and indirect supports are a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y and small library, instruction for library staff, and supporting volunteers. Supporting methods for public small library a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but method for private library is indirect support.

Keywords: Small Library, Ordinance of Small Libraries, Supporting Small Libraries, Local Autonomous Entity, Volunteer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swnsj@sewc.ac.kr)

• 접수일: 2011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7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I. 서론

1. 필요성 및 연구목적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여 열악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하였다. 초기에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4년 복권기금으로 작은도서관 25개관이 설치되었고, 2006년 문화관광부의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이 작은도서관 확산에 큰 공헌을 하였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 조성공모사업이 시작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¹⁾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487개관이었지만 2009년말 현재 703개관으로 5년 사이의 약 44.5%의 증가를 가져왔다.²⁾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고, 이 경향은 자치단체장에게서도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작은도서관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많은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작은도서관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동시에 주택 관련 법규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단지에서 많은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공공도서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서관서비스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는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이다. 해당 조례를 분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분석하여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1) 김홍렬,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192.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2. 선행 연구

정부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25개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평가 요소로 지역적 요소와 운영적 요소로 구분하였다.³⁾ 운영적 요소를 세분하면 운영주체, 운영비확보, 운영인력확보, 보조인력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격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⁴⁾ 이 연구에는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현황, 특성화전략,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⁵⁾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⁶⁾ 이 연구에는 2011년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 조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국의 25개 작은도서관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었다.⁷⁾

II. 작은도서관 현황 및 관련 법규

1. 작은도서관 현황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3,413개관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7개관으로 가장 많았다.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550개관이며, 경상남도가 그 다음으로 289개관이었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4.9배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9.9배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로 9.7배이었다. 작은도서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2.5배에 불과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2.9배로 낮았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작은도서관이 많으며,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항상 긍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3) 한국도서관협회,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4)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5)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7) 김홍렬, 전게서.

8) 문화체육관광부, 전게서.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4호)

〈표 1〉 지역별 작은도서관 수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수(S)*	공공도서관수(P)**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비율(S/P)
서울특별시	550	94	5.9
부산광역시	112	27	4.1
대구광역시	109	20	5.5
인천광역시	119	24	5.0
광주광역시	159	16	9.9
대전광역시	184	19	9.7
울산광역시	54	9	6.0
경기도	827	143	5.8
강원도	127	50	2.5
충청북도	120	30	4.0
충청남도	163	50	3.3
전라북도	194	43	4.5
전라남도	162	52	3.1
경상북도	157	55	2.9
경상남도	289	50	5.8
제주도	87	21	4.1
합계	3,413	703	4.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2011, p.116.

** 출처 : 한국도서관연감 2010, pp.362-363.

2.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어 있다. 작은도서관이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지만,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⁹⁾ 이 개념은 2007년 시행된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로 표현되어 있다. 2009년 3월에 공포된 『도서관법』 부칙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로 언급하고 하고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작은 도서관에는 문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건물면적은 33m²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그리고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이다. 사서직원 배치에 관한 기준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도서관과 같은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9) 『도서관법』 제2조(정의)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표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대한 기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개정 2009. 9. 21〉.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제시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의 문고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법 취지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시설 기준만을 본다면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최소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최대 기준으로 생각하여 이 기준만 맞추려는 경향도 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사서직원에 대한 기준이 사서직원이 있어도 혹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공간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3 주택 관련 법규

최근에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고 있는데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주택건설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전국의 작은도서관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도서관 공간이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따라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2010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¹⁰⁾ 여기에는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운동시설(실외), 작은 도서관은 의무시설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이 포

10) 문화체육관광부, 전게서.

함되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도라 판단된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과 교류하는 장소로 놀이터 29.2%, 집 12.5%, 북카페가 8.3%이며, 도서관이 2.1%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써 북카페, 독서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1. 조례 명칭 및 지역별 구분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서비스(ELIS)¹¹⁾에 수록된 46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들 조례는 크게 조례 명칭에 ‘지원’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례 명칭에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둘째, 조례 명칭에 ‘지원’이 포함 조례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조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다. 조례 명칭에 ‘지원’ 사용은 조례 공표 지역이나 연도별로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자치단체에 따라 조례 명칭에 ‘지원’을 포함한 지역의 조례 내용에 ‘지원’ 조항을 삽입하기도 하였으나, 조례 명칭에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에도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동되게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표 3〉 자치단체별 조례 공포 현황

자치단체		공포일	비고
광역시	기초		
광주광역시	남구	2010.11	‘지원’ 미포함
울산광역시	동구	2011.06	
경기도	하남시	2009.12	
충청북도	충주시	2011.08	
충청남도	서산시	2011.08	

11)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자치단체		공포일	비고
광역	기초		
전라북도	익산시	2010.04	'지원' 미포함
전라남도	본청*	2011.10	
	목포시	2008.10	
	나주시	2010.01	
	화순군	2011.03	
	무안군	2009.10	
	영광군	2009.06	
경상북도	영양군*	2010.01	
	울주군*	2011.08	
경상남도	사천시	2010.10	
	거제시	2011.01	
	고성군	2010.07	
	창원시	2010.07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9.05	
광주광역시	서구	2011.08	
	북구	2008.07	
	광산구	2010.02	
대전광역시	서구**	2011.08	
	유성구	2011.03	
울산광역시	북구	2010.03	
강원도	원주시	2009.07	
충청북도	청주	2011.08	
	청원군	2011.10	
충청남도	홍성군	2011.04	
	전라북도	본청	2009.04
전주시		2010.02	
완주군***		2010.04	
전라남도	순천시	2009.11	
	신안군	2009.01	
경상북도	포항시	2010.02	
	경주시	2010.10	
	경산시	2011.08	
경상남도	양산시	2010.0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2008.04	
부산광역시	중구	2010.12	'지원' 미포함
광주광역시	시청	2011.07	'지원' 포함
울산광역시	시청	2011.11	'지원' 포함
경기도	본청	2011.06	
	양평군	2011.10	
강원도	본청	2010.03	
충청북도	본청	2011.08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2008년에 3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8곳, 2010년에는 16곳, 2011년에는 19곳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변화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광역자치단체	1	1	1	5	8
기초자치단체	2	7	15	14	38
계	3	8	16	19	46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만들었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순이었다.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표 5〉 자치단체별/연도별 조례 변화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서울특별시		1			1
부산직할시			1		1
대구광역시					0
인천광역시					0
광주광역시	1		2	(1), 1	(1), 4
대전광역시				2	2
울산광역시			1	(1), 1	(1), 2
경기도		1		(1), 1	(1), 2
강원도		1	(1)		(1), 1
충청북도				(1), 3	(1), 3
충청남도				2	2
전라북도		(1)	3		(1), 3
전라남도	1	4	1	(1), 1	(1), 7
경상북도			3	2	5
경상남도			4	1	5
제주특별자치도	(1)				(1)
계	3	8	16	19	46

※ ()는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함

2 예산지원

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에 포함된다.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8개 지역의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 중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는 '예산의 지원'으로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조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울산광역시는 사업비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표 6〉 광역자치단체장 책무에 제시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조항

광역자치단체	조항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 혹은 '예산의 지원' 조항을 따로 두어서 작은도서관을 위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조례에는 구체적인 자료구입비와 설비비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조례에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7〉 지원 조항에 명시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조항

광역자치단체	조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강원도,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4호)

광역자치단체	조향
전라남도	<p>작은도서관이 당초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중 제2조 제1호의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비

<p>[전라남도 조례]</p> <p>제5조(예산의 지원 등)</p> <p>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당초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중 제2조제1호의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구입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비 <p>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거나 국민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나. 기초자치단체

조사한 모든 기초자치단체 조례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핵심 요소라 생각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와 지원 항목이 강제 조향인지 혹은 임의 조향인지 구분하였다. 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63.2%인 24개 곳이었으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금지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의 지원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제조향으로 포함시킨 지역은 전체의 7.9%에 불과한 3곳이었다. 나머지 모두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조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의 71.1%인 27개 곳이며, 지원 조향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11곳이었다.

<표 8> 기초자치단체 조례상 예산 지원 현황

인건비	분야	단체장 책무에 명시		지원에 명시	합계
		강제 조향	임의 조향	임의 조향	
인건비 포함 명시		0	19	5	24
인건비 지급 금지		0	1	0	1
명시되지 않음		3	4	6	13
계		3	24	11	38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포함한 지역 중에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한 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의 조례에는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양천구를 포함하여 22개 지역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료구입비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9〉 조례상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

기초자치단체	조항
서울 양천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광주 서구, 광주 남구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 중구, 대전 유성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경남 사천시, 경남 고성군, 경남 창원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기타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남 거제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남 양산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비, 자료구입, 프로그램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운영’ 조항에 포함시킨 지역 중에서는 지원 범위를 ‘인건비, 운영 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을 포함한 8지역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지역은 포괄적으로 지원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으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조례에는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 10〉 조례상 운영(예산의 지원)에 기술

기초자치단체	조항	비고
경기 양평군	사업비(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또는 미래에 작은도서관 발전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생략]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인건비,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요구 및 차등 지원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4호)

기초자치단체	조항	비고
충북 청원군, 경북 경산시, 전북 익산시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경비, 기타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북 청원군은 지도·감독 결과를 경비지원에 반영
전북 완주군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남 서산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 요구
대전 서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도서관 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위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그 운영을 도서관 관련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위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한 곳 뿐이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8곳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위탁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전부 위탁할 것인지 혹은 일부 위탁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 조례에서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한다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중구와 경북 영양군은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탁 범위에 대해서 부산 중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조례는 범위를 포함하지 않거나 전반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1〉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위탁

기초자치단체	조항
전남 목포시, 경남 고성군	(위탁)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북 영양군	(운영의 위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전반을 위탁할 수 있다.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운영의 위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조항
경북 경주시	(위탁운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부산 중구	(위탁운영)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 또는 독서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작은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경북 경산시	(위탁운영)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북 충주시	(운영자의 직무 자격) [생략] 필요한 시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공공도서관과 상호 협력

가. 광역자치단체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대한 사항은 8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포함시켜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자료 공동이용 등의 상호협력체계 수립을 포함하는 유형이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조례와 같이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 역할을 강조하거나 자료 공동이용과 같이 상호협력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

둘째, 독립된 조항으로 '협력체계 구축'항에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여기에 속한다. 경기도는 이와는 약간 다른 '작은도서관 지원' 조항에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작은도서관 기능' 조항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다른 조례에 비하여 비교적 상호협력을 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

광역자치단체	조항
강원도, 충청북도	(책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전라남도	(책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수립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기능)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나. 기초자치단체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은 11곳의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의 28.9%에 불과하였다. 협력에 관한 조항이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8곳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상호대차서비스'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예, 충청남도, 경상남도)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3〉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

기초자치단체	조항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충북 청주시	(책무)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 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 양평군, 경북 경주시	(책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완주시	(책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상호대차서비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운영자 교육

가. 광역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은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 활동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제 조항으로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14〉 광역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광역자치단체	조항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초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28곳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데 전체의 73.7%에 해당된다. 이들 28곳 중 오직 2곳만 교육에 대해서 임의조항이며 나머지 26곳은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은 ‘운영인력’ 혹은 ‘운영’ 조항에 포함시켰는데 오직 5개 지역만이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포함시켰다. 이들 차이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기초단체장이 관장해야 할 업무로 보는지 혹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는지 차이로 생각된다.

〈표 15〉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기초자치단체	조항
전북 완주시, 전북 전주시	(책무) [일부 생략]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광주 서구,	(책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 양천구, 경북 경주시, 울산 동구, 강원 원주시, 경남 고성군, 경남 양산시, 경남 사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영광군, 전남 무안군, 전남 나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목포시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 서구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이 [일부 생략]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 유성구, 경북 영양군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	(관리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울산 북구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전남 화순군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경북 울진군	(운영자의 직무 및 임명·해촉)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 민간지원 장려

가. 민간 후원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간접 지원의 또 다른 유형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단체나 민간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5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후원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도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포함시켰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이를 ‘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조항으로 분리시켰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양평군의 조례에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나. 자원봉사자

민간 지원의 방향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용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57.9%인 22개 지역의 조례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중 전북 완주군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는 강제조항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임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원 지원에 대해서 대전 유성구를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임의조항으로 재원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울산 동구에서는 재원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21개 자치단체로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7개 지역은 교육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울산 북구를 포함한 14개 지역은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직접 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조항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전라북도 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표 16〉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자 지원

기초자치단체	조항
대전 유성구,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포항시, 강원 원주시, 대전 유성구, 경북 경주시, 경남 고성군	(운영인력)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운영인력)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 북구	(운영인력)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남 화순군, 경남 사천시	(운영인력)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 양천,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경남 양산시, 대전 서구	(운영인력)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북 영양군	(운영인력)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자발적인 열의가 있는 자들로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전북 완주군	(관리·운영)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한다.
경북 울진군	(운영자의 직무 및 인명·해촉) [생략]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충남 홍성군	(관리 인력) 자원봉사자 4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남 서산시	(운영 인력)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북 전주시	(관리·운영)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충북 청원군	(운영자) 독서교육 또는 문화행사 등 기획·운영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 적극 활용
경기 양평군	(운영인력)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충북 충주시	(개관시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7. 지원 방법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정리하면 크게 직접적인 지원방법과 간접적인 지원방법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형태로 나타난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이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혹은 관련 단체 혹은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면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포함하는 지역이 있다.

둘째, 간접적인 지원 방법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자 교육, 민간 지원활동 장려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은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운영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진흥과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민간 지원활동 장려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원봉사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IV.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향

1.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 및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지원으로 도서구입비, 운영경비, 인건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 분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료관리시스템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자료의 공동 구입, 공동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모두에서 자유로운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 다른 지원방법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도서관 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운영 주체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정보 및 문화의 공유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 교육훈련, 보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조항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한다. 2011년 현재 전국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¹²⁾ 『건설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가 사립 작은도서관 수를 급속도로 증가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도서구입비, 운영경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 대신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운영주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25.7%,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 18.4%,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이 16.6% 등이 있다.¹³⁾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 이들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분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상 방법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방법이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운영에 있어서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임대 아파트 단지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원금은 한 달에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반 아파트단지는 지원금 50만에 달한다. 이러한 경향은 열악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들 지역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민간 단체 혹은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작은

12) 문화체육관광부, 전게서, p.117.

13) 상계서, p.118.

도서관 지원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혹은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작은도서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예산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전국의 작은도서관 80%를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시가 없이 공립 작은도서관과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지역의 조례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한 것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의 역할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언으로 지역별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추이와 비교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이 공공도서관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